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C형 항행업무기관에 대한 장기간 정기점검 미실시에 따른 항공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정기점검 대체기간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 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감독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정한 직무수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독관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이하 “직무관련자”라 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등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 그 밖에 직무 수행 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④ 그 밖에 감독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7조제2항 중 “A형·B형 기관을 대상으로 연”을 “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을 “지방항공청장”으로, “하되 필요시 직접점검을 시행”을 “대체”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그 기간은 연속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의 제목 “(선택교육훈련)”을 “(특별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감독관의 전문성 함양 및 재자격부여 등을 위해 필요한”으로,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하는 별도의 선택교육훈련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를 “특별교육훈련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단서 중 “수시점검”을 “특별점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목 4)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6 공통사항 항목의 자격 및 경험요건란 제2호나목 중 “감사기법 및 청렴교육”을 “청렴교육”으로 한다.

별표 7 제5호나목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별표 8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예시”를 “예시(※ 점검항목별 개별점검 또는 통합점검 여부에 따라

단위직무 소요시간은 가감될 수 있음)”로 한다.

다. 연간근무일수 = 연도 일수 - (토/일요일 일수 + 공휴일 일수 + 휴가 일수 + 교육 일수)

$$\begin{aligned} ※ \text{ (예시) 2023년 연간 근무일수(일)} &= 365 - (105 + 15 + 21 + 10) \\ &= 365 - 151 \\ &= 214 \end{aligned}$$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2(공정한 직무수행) ① 국</u> <u>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이 공정</u> <u>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u> <u>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u> <u>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 <u>② 감독관은 사적 이해관계에</u> <u>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u> <u>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u> <u>한다.</u> <u>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이</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사실</u> <u>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u> <u>속 불이행할 경우 직무를 중지</u> <u>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u> <u>치를 하여야 한다.</u> <u>1. 감독관이 「공직자의 이해충</u> <u>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u> <u>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5</u> <u>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이하</u> <u>“직무관련자”라 한다)가 사적</u> <u>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등</u> <u>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u> <u>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u>

	<u>지 아니한 경우</u> 2. <u>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u> 3. <u>그 밖에 직무 수행 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u> ④ <u>그 밖에 감독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u>
제7조(점검의 구분) ① (생략)	제7조(점검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u>A형·B형 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년도 점검결과·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점검기간·감독인력·점검방법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u> ③ <u>항행업무기관 중 C형 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은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의 내부안전감사 및 안전검토 등 자체 안전관</u>	② ----- 연----- ----- ----- ----- ----- ----- ----- ----- ③ ----- ----- ----- <u>지방항공청장</u> ----- ----- -----

리활동 결과를 매년도 3분기 말까지 제출받아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직접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⑥ (생략) 제21조(선택교육훈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필수교육훈련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하는 별도의 선택교육훈련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생략)	----- ----- ----- 대체----- ----- 단, 그 기간은 연속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특별교육훈련) ① ----- ----- ----- 감독관의 전문성 함양 및 재자격부여 등을 위해 필요한 ----- --- 특별교육훈련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